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석재은*

본 논문은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연령계층의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근로연령과 노령이라는 특성상 달라지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간에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비이고,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은 반면,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노령이 되면), 비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무직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과 가구원수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였다. 또한 주거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은 평균 61%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핵심단어: 노령, 은퇴자, 소득, 소비지출, 필요소득수준, 소득대체율, 소득계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I. 서론

임노동계약에 기반한 소득활동이 보편화된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전통사회와 달리, 노령이 되면 산업현장에서 은퇴하는 퇴직제도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됨으로써 노령은 곧 은퇴 및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사회가 확대가족구조에 기반하여 자녀에 의한 노령계층 부양을 당연시 하였다면, 현대 산업사회는 급속한 확대가족의 붕괴로 자녀에 의한 노령계층 부양능력이 급격히 감퇴되었다. 이와 같이 전통사회에 비하여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 오면서 노령계층의 삶의 재생산 조건은 오히려 악화된 반면, 의학 및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됨으로써 노령기는 더욱 길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현대 산업사회는 노령기의 삶의 재생산 방식을 전통사회와 구별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를 설계했던 베버리지(Beveridge)가 노령(*old-age*)을 노동시장에서의 은퇴로 생계수단이 상실된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설정하고, 노령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사회연대에 입각한 공적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적연금은 노령기의 소득상실이라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노령계층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고안물이다. 동시에 공적연금은 노령계층에 대한 부양책임을 기존의 가족 부양체계에서 사회적 부양체계로의 이전을 가능케 한 고안물이기도 하다. 여러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적연금제도일 정도로 공적연금제도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연금제도가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제도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석유 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선진국의 장기적 경제침체와 심각한 국가재정적자는 그동안 계속 성장을 거듭해 온 공적연금 제도규모와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더 이상 현상대로 감당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 15년째에 접어든 우리 나라 국민연금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연금재정 위기가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선진국의 연금위기가 재현될 조짐은 뚜렷하다. 1998년 국민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금구조적으로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어, 현행 급여-부담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46년경에 적립기금이 고갈되고 그 이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3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석재은 외, 2002).

더욱이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욱 과중시켜 경제생산 기반을 심각하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¹⁾로 전체인구의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노령계층을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근로계층의 비율은 작아지는 반면 노령인구의 비율은 매우 높아져 노령계층에 대한 사회적 부양 부담이 과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율이 7%일 때만 해도 근로계층 10명이 노령계층 1인을 부양하는 수준이었으나, 고령화율이 14%에 달하면 근로계층 5명이 노령계층 1인을 부양하여야 하며, 고령화율이 20%에 달하면 근로계층 3명이 노령계층 1인을 부양해야 한다(통계청, 2001). 이와 같이 과중한 사회적 부양부담은 근로연령계층의 삶의 조건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이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공적연금제도가 근로연령계층으로부터 노령세대로의 세대간 자원재배분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때, 경제침체와 인구고령화라는 외부조건 변화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노령연금 보장수준이 근로연령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세대간 자원재배분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근로연령계층이 수용가능한 부담수준으로 지급이 가능한 급여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노령계층의 생활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급여수준 확보가 중요한 연금개혁의 과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부담과 욕구의 상이한 방향을 고려한 공적연금의 적정급여수준 도출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첫째, 근로연령계층의 수용가능한 부담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할 것이며, 둘째, 노령계층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노령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총소득 중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를 책임져야 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 과제 중 본 논문은 두 번째 과제, 즉 노령계층의 욕구 측면에서 노령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수준을 모색하

1) 인구가 안정적으로 재생산·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은 2.2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0, 2002년 합계출산율은 1.17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의 진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선진국의 연금위기를 거울삼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건전성의 확보차원에서 부담 가능 수준과 급여수준 하향조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반하여, 노령계층의 욕구라는 측면에서 노령계층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노령계층에게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적연금제도의 본래적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제도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²⁾ 또한 세 번째 과제인 노령계층의 필요소득 중 공적연금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은 두 번째 과제인 노령계층의 총필요소득의 수준이 도출된 다음에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연금의 급여-부담구조 개혁을 위한 두 번째 과제인 노령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로 도출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연령계층의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근로연령과 노령이라는 특성상 달라지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은 공적연금의 적정 급여수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최근에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OECD국가들에서 노인들의 평균가처분소득은 사회전체의 평균가처분소득

2) 공적연금을 체계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는 적응(adaption), 유형유지(pattern maintenance) 기능은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목표달성(goal attainment), 통합(integration)의 기능은 충족시킬 수 없다.

대비 84.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도 OECD 국가들에서 노인의 소득대체율이 퇴직전 소득 대비 70~9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대체율 수준에 대하여 디즈니(Disney)는 여가에 따른 효용, 근로관련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노인의 소득대체율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뮌넬(Munnell)의 연구에서는 소득세 감소 및 퇴직에 따른 생활비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퇴직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대체율은 평균적으로 퇴직전 가처분소득의 72%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2000: 71~72 재인용).

또한, 근로세대의 세후 실질가처분소득에 대한 노령세대의 연금소득의 적정비를 설정에는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균등화 지수를 참고할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 산출을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의 경우 일반 4인가구를 1.0으로 보았을 때, 노인 1인가구는 약 0.28~0.42, 노인 2인가구는 약 0.1~0.53로 나타났다(박순일 외, 1994). 이는 노령에 따른 가구규모 축소효과를 고려하여 근로연령가구가 4인가구로 구성되고 노인가구가 2인가구로 구성된 표준모형을 설정한다고 할 때, 노령가구의 필요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의 약 50%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용하(1997)는 적정연금급여 수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수요측면에서 수급자 본인의 종전소득, 현역근로계층의 평균적인 임금 및 급여수준, 고령자의 실제 평균적 생활수준,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급측면에서 비용부담과의 귀착과 장기적인 연금재정에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세대의 부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근로세대 부담에 의한 부과방식 급여율은 25~33% 수준이 적정수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997). 김용하가 제시한 적정 연금급여수준은 근로계층의 부담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며, 노인의 '필요'라는 측면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관심과는 상이하다.

윤석명(1998)은 노령계층의 필요소득대체율을 최저소득대체율 및 적정소득대체율의 2가지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최저소득대체율은 한국노동연구원(1998)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를 기본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적정소득대체율은 한국노총(1999)의 『도시근로자 생계비』를 이용하였다. 최저소득대체율은 노동연구원의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124,790원(비소비지출제외)과 1998년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중 50~54세의 가처분소득인 2,210,700원을 비교하여 51%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적정소득대체율은 한

〈표 1〉 노인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균등화 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국노동통계국	Danziger
노인 1인가구	0.31	0.28	0.42
노인 2인가구	0.53	0.51	0.52
일반 4인가구	1.00	1.00	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국노총의 3인 가구 표준생계비인 1,615.2천원과 최저소득대체율 추정시 사용된 소득인 2,210,700원과의 비율인 73%를 적정소득대체율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윤석명의 노령계층 필요소득 추정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동연구원과 한국노총에서 각각 산출한 생계비인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를 필요소득액으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이라는 점이 특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소득계층별로 필요 소득대체율이 다를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고, 평균개념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권문일(2000)은 2가지 방법을 통해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4인 가구 대비 2인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즉, 2인 가구를 노령계층의 표준가구로 보고, 4인 가구를 퇴직이전의 일반표준가구로 가정하여 4인 가구 대비 2인 가구의 소득, 소비지출을 분석하여 노령계층의 필요소득대체율을 72.8%로 추정하였다. 이 방법 역시 노인가구의 가구원수 규모 축소효과만을 감안한 방법으로 노령계층의 연령적 특성으로 인한 소비지출 변화 효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의 상이성을 고려치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득계층별로 세분하여 필요소득수준을 분석하였다. 1998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가구주 소득을 5분위로 나눈 후 노령계층의 표준가구를 2인 가구로 가정하여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와 비소비지출 증

〈표 2〉 권문일의 필요소득대체율 추정(1)

(단위: 천원, %)

구분	2인가구	4인가구	소득대체율
가구주 소득	1175.0	1652.7	71.1
소비지출	962.9	1370.3	70.3
가계지출	비소비지출	214.5	247.0
합계	1177.4	1617.3	72.8

자료: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2000: 73).

〈표 3〉 권문일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 추정(2), 1998

(단위: 천원, %)

구 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구주근로소득(a)	1493.2	628.1	1115.0	1388.7	1771.6	2567.6
소비지출(b)	1297.9	760.0	998.4	1203.4	1454.7	2072.3
평균가구원수	3.62	3.21	3.48	3.65	3.8	3.97
OECD균등화지수 ¹⁾ (c)	2.50	2.30	2.45	2.53	2.60	2.70
노인가구소비지출						
조정지수(1.7/c)(d) ²⁾	0.68	0.74	0.69	0.67	0.65	0.63
조정소비지출(e)						
b*(c/1.7) ²⁾	882.6	561.7	692.8	810.2	951.2	1304.8
조정 비소비지출(f) ³⁾	199.1	68.7	108.4	154.2	227.9	436.0
소득대체율(%)						
(e+f)/a	72.4	100.3	71.9	69.4	66.6	67.8

주: 1) OECD 기준 3인 및 4인가구 균등화지수 2.2와 2.7을 보간법에 의해 재구성.

2) 1.7은 OECD에서 제시한 성인 1명을 1로 할 때, 노인부부가구의 균등화지수임.

3) 비소비지출 항목에서 공적연금보험료 제외.

자료: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2000:73).

공적연금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고려한 후 노령계층의 퇴직전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에 따라 저소득계층인 1분위 계층은 100%의 소득대체율을, 고소득계층인 5분위 계층은 67.8%의 소득대체율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권문일의 노령계층의 필요소득 추정방법은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연구보다 진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노령가구의 가구규모 축소효과만을 고려한 한계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원종욱(2000)은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을 도출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1999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가구의 소비수준을 생애평균소득과 비교하여 필요소득대체율을 53~71%로 추정하였다. 도출방법은 도시근로자가구중 홀벌이가구 중에서 20~59세의 4인가구 평균소득을 생애평균소득 개념으로 대체하고, 60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는 노인 중 평균소득계층의 소비수준을 소득에 의하여 소비제약을 받지 않는 노령계층 적정소비수준의 상한점으로 삼았으며, 평균소득이 하계층도 포함하는 소비수준을 노령계층의 적정소비수준의 하한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접근은 국민연금의 평균급여대체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는 상기

〈표 4〉 원종욱의 적정소득대체율 추정

(단위: 만원)

가구주 연령계층	총소득	총소비	생애평균소득대비 노후소비지출비율
20~29세	184	125	
30~39세	185	145	
40~49세	189	167	
50~59세	190	182	0.71 (135/188)
60세 이상	192	135	0.53 (95/178)
	(95)	(95)	
전체	188	151	
	(178)	(145)	

주: ()안은 60세 이상 도시근로자 중 평균소득자외에 평균소득 이하의 근로자를 포함한 경우임.
자료: 원종욱(2000).

2가지 접근보다는 훨씬 진보한 방법으로 판단되나, 평균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안종범·전승훈(2003)은 4년간(1998-2001) 축적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은퇴자(retiree)의 소득과 소비가 근로시기에 비하여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analysis)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는 논문이다. 기존의 은퇴자의 소득 및 소비에 대한 연구는 패널조사의 부재로 인하여 은퇴자의 회고(retrospection)에 의존하여 근로시기와의 소득 및 소비변화를 분석하거나, 혹은 근로연령계층과 연령계층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횡단면 비교(cross-sectional analysis)를 통하여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정확한 은퇴자의 소득과 소비 변화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도 4년간 은퇴한 연령계층의 표본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노령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석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결국 기존의 연구와 같이 근로연령계층과 연령계층의 소득과 소비의 횡단면 비교를 통하여 60%의 대체율이 연령계층의 필요소득대체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볼 경우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추정함에 있어 사용된 방법들은 공통적으로 퇴직전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퇴직후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적게는 50% 높게는 75% 수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개념정의와 분석자료

1. 개념정의

본 연구에서는 노령계층이 생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로연령계층 소득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의 분석을 통하여 필요소득수준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노령기에 적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지출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소득수준은 산출하기도 어렵고, 설사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필요소득수준 개념에는 '필요'라는 객관화하기 어려운 개념이 들어 있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정책에서는 65세 혹은 60세 등 일정 연령이상의 계층을 '노령계층'이라는 동일한 범주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이들 노령계층은 그 내에서 연령, 소득, 건강상태, 가구형태, 성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모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소득수준이 상이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소득수준이라는 개념은 개별 학자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가능해도 실제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또한 필요소득의 대체개념으로 삼고자 하는 가구소비지출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적 지표이다. 가구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탄력적인 요인과 비탄력적인(경직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구소비수준이 가구소득수준에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실증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구소비수준을 비탄력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가구규모와 가구주 연령을 들 수 있다. 가구규모는 가족의 생성, 확대, 축소, 소멸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한다. 마찬가지로 가구주의 연령은 생애주기의 발달과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은퇴로 소득이 상실되어도, 은퇴한 가구주의 연령이 중장년층인 경우에는 자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확대기의 가족주기에 있고, 자녀교육, 자녀 결혼 등 생애과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은퇴이전과 비교하여 소비수준의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고정적 가구 소비지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령 은퇴자의 경우에는 가족의 주기상 축소기에 들어와 가구규모도 작아지고, 활동범위도 축소되어 교통비, 통신비 등도 크게 줄고 식품비, 피복비 등도 근로연령계층에 비해 감소한다.

따라서 가구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은퇴여부에 따른 소득상실여부 보다는 가구규모 및 연령에 따른 '필요'(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정의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노령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저하로 소비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소득효과는 통제된 상태에서 부양가구원 규모의 축소 효과 및 생애주기상의 소비지출 특성의 변화(예: 교육비 및 교통통신비 감소, 보건의료비 증가 등)로 인한 연령효과를 감안한 소비지출수준'으로 정의하고, 몇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산출해 보고자 한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소득·소비실태 자료로 통계청의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현재 활용가능한 최신의 소득·소비조사자료로는 통계청의 2002년도 『도시가계조사자료』가 있으나, 도시가계조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농어촌가구와 1인 가구가 제외되어 있다. 소비지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구와 함께 자영업자, 실업자, 노인·아동 등 비경제활동자를 포함한 비근로자가구도 조사하고 있으나,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만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도시지역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소득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1인 가구, 농어촌가구,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은 담고 있지 못한데 반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노인가구는 특히 1인 단독가구가 많고, 농어촌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상당수가 비근로자가구이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자료에 의하여 분석할 경우 노인가구의 주요한 특성을 담고 있는 1인 가구 및 농어촌가구, 비근로자가구 등이 제외되어 있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비하여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가장 최근의 조사시점이 2000년도이지만, 도시가계조사자료와 달리 농어촌가구를 포함하며 전국의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소비실태를 조사한 자료로서, 공신력있는 소득·소비지출조사 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조사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조사자료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농어촌가구, 비근로자가구 등을 포함하여 전국 가구의 소득·소비실태자료를 담고 있는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5년을 주기로 조

사하는 자료로, 총표본가구수는 전국의 약 23,720가구이며 이 중 노인가구 표본수는 2,546개이다.

가구의 소득·소비지출 수준을 분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가구원수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소득과 소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원수별로 소득 및 소비가 차이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도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W_i = \frac{Y_i}{S_i^\epsilon}$$

여기서 Y_i 는 i 가구의 소득을 나타내며, S_i 는 i 가구의 가구원수, W_i 는 i 가구의 각 가구원수에 의해 조정된 소득 및 지출을 나타낸다. ϵ 은 균등탄력성(*equivalence elasticity*)을 나타내는데 만일 $\epsilon=0$ 이면 해당가구에 가구원이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지출) 없이 i 가구가 전과 같은 복지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epsilon=1$ 인 경우 해당가구에 가구원이 증가할 때 규모의 경제효과가 전혀 없이 증가한 가구원수만큼 소득이 산술적으로 증가되어야 전과 같은 복지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의 경우 $\epsilon=0.5$ 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가구균등화 규모 탄력성을 중간 정도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IV.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 비교

1. 분석목적 및 방법

연령계층별로 소비지출수준이 변화하는지 관찰하기 위하여 가구주의 연령계층별로 평균 총소비지출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노령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과 비교하여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령계층과 20~64세 근로연령계층 가구주의 가구소비지출을 비교하였다. 이 때, 소비지출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가구규모 효과를 배제하고 연령효과에 의한 소비지출 감소 부분을 포착하기 위하여 OECD 가구균등화 지수의 적용을 통하여 가구균등화를 한 상태에서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의 차이를 비교하고, 차이의 통계적 유의

미성을 T-검증방법을 통하여 검증해 보았다.

2. 분석결과: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 비교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한 후 가구주 연령계층별 평균 총소비지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45~49세 연령계층에서 가구소비지출이 94만 7천원으로 정점을 이루고, 55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소비지출이 감소하다 65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여 45~49세 소비지출 대비 65~69세 지출수준은 69%, 70~74세는 51%, 75~79세는 47%, 80세 이상은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을 비교한 결과, 총소비지출을 비롯하여 모든 소비지출항목에서 두 집단이 유의미한 소비지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총소비지출의 경우 노령계층은 54만 5천원, 근로연령계층은 86만 5천원으로 무려 32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근로연령계층 소비지출 대비 노령계층 소비지출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계층은 근로연령계층에 비하여 식료품 등 대부분의 소비지출항목에서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의 측면에서는 노령계층이 근로연령계층에 비해 교통통

〈표 5〉 가구주 연령계층별 평균 총소비지출

(단위: 원, %)

연령	평균 총소비지출	소비지수 (45-49세 소비지출 = 100)
15-19	711,323	75.12
20-24	843,143	89.04
25-29	847,920	89.55
30-34	793,659	83.82
35-39	816,965	86.28
40-44	909,060	96.00
45-49	946,914	100.00
50-54	945,401	99.84
55-59	857,792	90.59
60-64	745,729	78.75
65-69	650,283	68.67
70-74	484,918	51.21
75-79	448,775	47.39
80+	377,692	39.89

자료: 통계청(2000).

〈표 6〉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간 소비지출 차이 검증: T-검증

(단위: 원, %)

소비지출 항목	평균		두집단간 평균차 (A-B)	두집단간 평균비율 (A/B)	t-값	유의도
	65세 이상 노령계층 (n=2,546)	20~64세 근로연령계층 (n=21,055)				
	(A)	(B)				
식료품	157,740	214,784	-57,043	73.4	-33.11	0.0001
주거	85,154	93,869	-8,714	90.7	-4.85	0.0001
가구집기	24,177	45,559	-21,382	53.1	-18.65	0.0001
피복신발	27,385	50,442	-23,057	54.3	-26.72	0.0001
보건의료	57,961	36,622	21,340	158.3	10.74	0.0001
교육	14,085	101,020	-86,935	13.9	-61.31	0.0001
교양오락	19,310	44,854	-25,544	43.1	-29.45	0.0001
교통통신	64,709	151,960	-87,252	42.6	-34.67	0.0001
기타소비	94,317	126,102	-31,785	74.8	-13.00	0.0001
총소비지출	544,839	865,211	-320,372	63.0	-38.76	0.0001

자료: 통계청(2000).

신비와 교육비를 각각 8만 7천원 가량 적게 지출하며, 다음으로 식료품비가 5만 7천원, 기타소비 3만 2천원, 교양오락비 2만 6천원, 피복신발비 2만 3천원, 가구집기비 2만 1천원, 주거비 9천원 순으로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의료비의 경우 노령계층이 근로연령계층보다 2만 1천원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의 측면에서는 노령계층의 교육비 지출이 근로연령계층의 14%에 불과하여 가장 크게 차이가 나고, 교통통신비와 교양오락비가 각각 43% 수준이며, 가구집기비와 피복신발비가 각각 53%, 54% 수준이고, 식료품과 기타소비지출이 각각 73%, 75%수준이며, 주거비는 91%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령계층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근로연령계층의 158.3% 수준으로 무려 58.3% 포인트 높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으로 볼 때,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간에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역시 교육비이고, 그 다음으로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V. 가구소비지출 결정요인

1. 분석목적 및 방법

근로연령계층 소득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을 포함하여 가구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가구소비지출 및 각각의 소비지출 항목별 소비지출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주연령, 가구주 연령제곱, 가구소득수준, 지역, 가구주 성별, 가구원수, 취업자수, 가구주 취업여부, 가구주 종사산업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 연령의 제곱, 가구소득수준, 가구원수, 취업자수는 연속변수로 하였으며, 지역, 가구주 성별, 가구주 취업여부, 가구주 종사산업은 더미변수로 만들었다.

<표 7> 변수설명 및 기술통계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n=23,720)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총소비지출	총소비지출 (단위: 원)	1,459,389	890,782	98,333	21,210,833	
식료품	식료품 (단위: 원)	366,930	184,773	50,000	7,476,667	
주거	주거 (단위: 원)	155,536	153,289	2,500	8,332,500	
가구집기	가구집기 (단위: 원)	74,955	131,523	0	6,316,667	
종속 변수	피복신발 (단위: 원)	83,215	93,714	0	3,000,000	
	보건의료 (단위: 원)	65,566	120,902	0	7,166,667	
	교육 (단위: 원)	177,911	248,577	0	4,000,000	
	교양오락 (단위: 원)	73,851	102,055	0	2,862,500	
	교통통신 (단위: 원)	250,015	298,342	0	6,750,000	
	기타소비 (단위: 원)	211,410	226,632	10,000	8,166,667	
	가구주 연령	연령	45.4	13.3	15.0	94.0
	가구주 연령제곱	연령제곱(연령증가에 따른 변화)	2,240	1,319	225.0	8,836
	가구소득수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	2,185,327	2,750,736	0	129,083,333
독립 변수	지역	광역시=0, 기타시도=1 더미변수	0.48	0.50	0	1
	가구주 성별	남=0 여=1 더미변수	0.22	0.41	0	1
	가구원수	가구원수	3.10	1.34	1	10
	취업자수	가구내 취업자수	1.32	0.84	0	6
	가구주 취업여부	무직=0, 취업=1 더미변수	0.81	0.39	0	1
	가구주 종사산업	비농어업=0, 농어업=1 더미변수	0.20	0.40	0	1

2. 분석결과: 가구소비지출 결정요인

변수들간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지출항목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비지출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소비지출항목은 식료품비이며, 교통통신비, 기타소비비, 교육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가구집기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지출과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과 연령제곱은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소비지출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타 소비지출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 및 연령제곱과 보건의료비와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모든 소비지출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교통통신비를 제외한 모든 소비지출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가 아닌 기타시도의 경우 소비지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도 모든 소비지출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소비지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와 취업자수는 모두 모든 소비지출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원수, 취업자수가 많을수록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취업여부의 경우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소비지출항목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한 경우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건의료비의 경우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보건의료지출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령의 경우와 건강상태가 안 좋을 경우 취업을 할 수 없는 반면, 보건의료지출은 높을 것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농업여부는 모든 소비지출 항목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유의미하게 소비지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간 상관관계에서 연령과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과 소득, 가구원수, 취업자수, 취업여부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고, 가구원수가 작아지고, 취업자수가 작아지며, 무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과 지역, 성, 농업여부와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표 8〉 변수간 상관관계분석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비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소비지출	1.000***									
식료품	0.744***	1.000***								
주거비	0.404***	0.237***	1.000***							
가구집기	0.464***	0.255***	0.152***	1.000***						
피복신발	0.593***	0.420***	0.166***	0.323**	1.000***					
보건의료	0.287***	0.154***	0.076***	0.079***	0.122***	1.000***				
교육	0.607***	0.438***	0.137***	0.151***	0.291***	0.049***	1.000***			
교양오락	0.527***	0.349***	0.116***	0.237***	0.387***	0.098***	0.277***	1.000***		
교통통신	0.653***	0.378***	0.135***	0.168***	0.267***	0.069***	0.233***	0.243***	1.000***	
기타소비	0.621***	0.409***	0.143***	0.262***	0.364***	0.132***	0.172***	0.286***	0.243***	1.000***
연령	-0.105***	-0.088***	-0.030***	-0.094***	-0.088***	0.096***	-0.099***	-0.129***	-0.107***	0.025***
연령제곱	-0.156***	-0.145***	-0.049***	-0.103***	-0.111***	0.087***	-0.144***	-0.146***	-0.132***	-0.005
소득	0.440***	0.352***	0.137***	0.199***	0.298***	0.094***	0.277***	0.274**	0.277***	0.269***
지역	-0.088***	-0.127***	-0.021***	-0.039***	-0.060***	-0.012***	-0.100***	-0.050***	0.000	-0.044***
성	-0.274**	-0.312***	-0.087***	-0.106***	-0.117***	-0.063***	-0.144***	-0.136***	-0.177***	-0.169***
가구원수	0.493***	0.625***	0.150***	0.127***	0.215***	0.094***	0.448***	0.205***	0.240***	0.216***
취업자수	0.307***	0.381***	0.094***	0.089***	0.194***	0.036***	0.123***	0.127***	0.223***	0.196***
취업여부	0.241***	0.268***	0.070***	0.085***	0.150***	-0.020***	0.154***	0.131***	0.175***	0.120***
농업여부	-0.247***	-0.274***	-0.074***	-0.087***	-0.154***	0.019***	-0.159***	-0.135***	-0.180***	-0.123***
	연령	연령제곱	소득	지역	성	가구원수	취업자수	취업여부	농업여부	
연령	1.000***									
연령제곱	0.986***	1.000***								
소득	-0.056***	-0.086***	1.000***							
지역	0.039***	0.047***	-0.043***	1.000***						
성	0.159***	0.187***	-0.172***	0.026***	1.000***					
가구원수	-0.131***	-0.195***	0.249***	-0.041***	-0.388***	1.000***				
취업자수	-0.120***	-0.178***	0.257***	-0.060***	-0.263***	0.483***	1.000***			
취업여부	-0.431***	-0.483***	0.190***	-0.035***	-0.285***	0.309***	0.581***	1.000***		
농업여부	0.436***	0.436***	-0.193***	0.046***	0.289***	-0.312***	-0.571***	-0.979***	1.000***	

주: *** p< .001

높을수록 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인 경우가 많으며, 농업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 소득, 가구원수는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성, 취업여부, 농업여부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에 의한 총가구소비지출에 대한 설명력은 36.8% 정도

〈표 9〉 가구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R ²
연령	39666***	2349.480	16.88	0.368
연령제곱	-422.837***	24.397	-17.33	
소득	0.104***	0.002	59.04	
지역(기타시도 = 1)	-91458***	9250.307	-9.89	
성(여성 = 1)	-127263***	12327	-10.32	
가구원수	227134***	4310.489	52.69	
취업자수	-7204.170	7547.732	-0.95	
취업여부(취업 = 1)	-233843***	58515	-4.00	
농어업여부(농어업 = 1)	-263519***	57302	-4.60	
상수	-4630	75425	-0.06	

주: *** p < .001

이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은 반면, 연령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고(55세 이상이 되면), 비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무직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으로 볼 때,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과 가구원수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과 연령제곱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항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식료품의 경우 총가구소비지출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취업자수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식료품의 경우 가구원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다음이 소득, 지역, 연령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지출의 이들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45.3% 수준이다. 교육지출의 경우도 총소비지출과 연령, 소득, 지역, 가구원수, 농어업여부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동일하나,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교육지출이 높으며, 취업자수가 적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높으며, 취업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비 지출은 학령기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구주 취업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자녀가 취업연령이 아니라 학령기인 경우 취업자수가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취업자수가 적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교육비 지출의 경우 가구원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다음이 소득, 취업자수, 연령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의 이들

〈표 10〉 가구소비지출 항목별 결정요인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R ²
식료품	연령	6972.444***	453.610	15.37	0.453
	연령제곱	-69.607***	4.710	-14.78	
	소득	0.013***	0.000	37.09	
	지역(기타시도 = 1)	-33175***	1785.940	-18.58	
	성(여성 = 1)	-25221***	2379.964	-10.60	
	가구원수	68656***	832.218	82.50	
	취업자수	7711.976***	1457.227	5.29	
	취업여부(취업 = 1)	-36983***	11297	-3.27	
	농어업여부(농어업 = 1)	-44254***	11063	-4.00	
	상수	15386	14562	1.06	
주거비	연령	4269.813***	499.150	8.55	0.037
	연령제곱	-45.089***	5.183	-8.70	
	소득	0.006***	0.000	14.74	
	지역(기타시도 = 1)	-2478.773	1965.240	-1.26	
	성(여성 = 1)	-8502.406***	2618.901	-3.25	
	가구원수	10517***	915.769	11.48	
	취업자수	-107.383	1603.526	-0.07	
	취업여부(취업 = 1)	-33520**	12431	-2.70	
	농어업여부(농어업 = 1)	-29282**	12174	-2.41	
	상수	54020***	16024	3.37	
가구집기	연령	-543.714	414.560	-1.28	0.054
	연령제곱	-1.881	4.41	-0.43	
	소득	0.008***	0.000	26.09	
	지역(기타시도 = 1)	-6657.227***	1671.565	-3.98	
	성(여성 = 1)	-14100***	2227.546	-6.33	
	가구원수	5704.735***	778.921	7.32	
	취업자수	124.057	1363.903	0.09	
	취업여부(취업 = 1)	-7303.074	10574	-0.69	
	농어업여부(농어업 = 1)	-3060.288	10355	-0.30	
	상수	80671***	13630	5.92	
피복신발	연령	1054.060***	291.826	3.61	0.119
	연령제곱	-14.355***	3.030	-4.74	
	소득	0.008***	0.000	38.34	
	지역(기타시도 = 1)	-6882.073***	1148.968	-5.99	
	성(여성 = 1)	-717.280	1531.127	-0.47	
	가구원수	7095.587***	535.400	13.25	
	취업자수	6596.066***	937.493	7.04	
	취업여부(취업 = 1)	-18708**	7268.012	-2.57	
	농어업여부(농어업 = 1)	-19471**	7117.417	-2.74	
	상수	40865***	9368.393	4.36	

〈표 10〉 가구소비지출 항목별 결정요인 분석(계속)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R ²
보건의료	연령	1463.180***	395.404	3.70	0.0287
	연령제곱	-4.943	4.106	-1.20	
	소득	0.003***	0.000	11.63	
	지역(기타시도 = 1)	-2226.722	1556.774	-1.43	
	성(여성 = 1)	-12693***	2074.574	-6.12	
	가구원수	7288.226***	725.431	10.05	
	취업자수	-1915.299	1270.240	-1.51	
	취업여부(취업 = 1)	-6450.979	9847.668	-0.66	
	농어업여부(농어업 = 1)	193.112	9643.621	0.02	
	상수	-8383.047	12694	-0.66	
교육	연령	14622***	701.065	20.86	0.277
	연령제곱	-156.497***	7.280	-21.50	
	소득	0.017***	0.001	32.55	
	지역(기타시도 = 1)	-38384***	2760.211	-13.91	
	성(여성 = 1)	32513***	3678.288	8.84	
	가구원수	82802***	1286.213	64.38	
	취업자수	-64940***	2252.178	-28.83	
	취업여부(취업 = 1)	2406.134	17460	0.14	
	농어업여부(농어업 = 1)	-33395*	17098	-1.95	
	상수	-328223***	22506	-14.58	
교양오락	연령	332.170	320.010	1.04	0.107
	연령제곱	-10.783***	3.323	-3.25	
	소득	0.009***	0.000	35.93	
	지역(기타시도 = 1)	-6111.259***	1259.936	-4.85	
	성(여성 = 1)	-8344.714***	1679.005	-4.97	
	가구원수	9202.929***	587.109	15.67	
	취업자수	-2921.450**	1028.037	-2.84	
	취업여부(취업 = 1)	-10893	7969.963	-1.37	
	농어업여부(농어업 = 1)	-12188	7804.822	-1.56	
	상수	55381***	10273	5.39	
교통통신	연령	3695.325***	925.807	3.99	0.126
	연령제곱	-52.252***	9.61	-5.44	
	소득	0.023***	0.001	32.86	
	지역(기타시도 = 1)	15291***	3645.062	4.19	
	성(여성 = 1)	-45694***	4857.451	-9.41	
	가구원수	21860***	1698.538	12.87	
	취업자수	31037***	2974.166	10.44	
	취업여부(취업 = 1)	-78341***	23058	-3.40	
	농어업여부(농어업 = 1)	-76623***	22580	-3.39	
	상수	121758***	29721	4.10	

〈표 10〉 가구소비지출 항목별 결정요인 분석(계속)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R ²
기타소비	연령	7800.999***	707.453	11.03	0.115
	연령제곱	-67.429***	7.346	-9.18	
	소득	0.017***	0.001	32.42	
	지역(기타시도 = 1)	-10834***	2785.364	-3.89	
	성(여성 = 1)	-44504***	3711.807	-11.99	
	가구원수	14006***	1297.933	10.79	
	취업자수	17211***	2272.701	7.57	
	취업여부(취업 = 1)	-44049**	17619	-2.50	
	농어업여부(농어업 = 1)	-45441**	17254	-2.63	
	상수	-36106	22711	-1.59	

주: * p<.05, ** p<.01, *** p<.001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27.7%이다. 한편, 주거, 가구집기,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지출 등은 독립변수에 의한 설명력이 10% 내외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VI.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

1. 분석목적 및 방법

앞에서의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 비교와 가구소비지출 결정요인 분석을 통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몇 가지 주요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령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감소'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수준은 소득수준에 비례한다는 원칙이 노령기의 수입감소로 인한 소비수준의 제약이라는 공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양가구원 규모의 축소이다. 근로연령기에는 가족주기가 성장가족이므로 일반적인 가족 형태가 부부+자녀, 혹은 부모+부부+자녀로 가족규모가 비교적 크고 부양가구원수도 많다. 자연히 소비지출수준도 높다. 반면, 노령기에는 가족주기상 자녀의 결혼 등으로 노인부부 혹은 노인단독가구 등 축소가족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가족규모가 작고 부양가구원수도 작다. 따라서 소비지출수준도 근

로연령계층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셋째, 노인의 소비지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애주기상 연령에 따른 욕구의 상이성을 들 수 있다. 즉, 노령기의 욕구 자체가 근로연령계층과 상이함에 따라 소비지출항목별로 필요지출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예컨대, 노령계층의 경우 누구나 만성질환을 한 두가지 갖게 되고 거동불편자가 많아짐에 따라 보건의료욕구는 높은 반면, 신체노화와 함께 필요열량이 작아지면서 식품비 지출수요는 낮아지고, 성장기 학생이 아니므로 교육비 지출수요도 대폭 감소하며, 활동반경도 좁아지면서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등의 지출수요가 낮아지는 등 노령계층의 욕구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지출수준의 변화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노인의 필요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 가구규모, 연령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출수준에의 영향을 각각 소득효과, 가구규모효과, 연령효과로 명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득의 제약 없이 노령으로 인한 자연스런 지출변화를 감안한 노인의 필요소득이 적정필요소득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소득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가구규모효과와 연령효과에 의한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며, 노령계층이 근로연령계층의 소득대비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가져야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적 모형설계는 20~59세 근로연령계층의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및 소비 대비 65세 이상 2인 가구의 소비를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모형설계의 의도를 살펴보면, 첫째, 20~59세 연령계층의 소득 및 소비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 것은 우리 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급여율 산정방식이 전 생애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59세의 전 생애 근로연령기간의 평균소득을 비교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적정급여율 설정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전 생애에 걸친 근로연령기간의 평균소득 및 평균소비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이 차지하는 비중을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으로 보고자 하였다. 둘째, 노령계층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OECD, UN 등 국제기구 및 우리 나라에서 노령인구의 정의가 65세 이상으로 설정되고 있고, 현재는 우리 나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0세이지만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9세 근로연령계층 대비 60세 이상 노령계층에 대한 필요소득수준 정보도 요약 및 결론에서 제공하고 있다. 셋째,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2인 가구로 하고, 20~59세 근로연령계층의 경우 2인 이상 가구로 설정한 것은 노령에 따른 가구규모 축소효과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구조로서 실제치에 가까운 모형으로 설정코자 한 것이다.

1) 방법 I : 소득효과 통제하에 연령효과,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한 소비지출 수준 변화

방법 I 은 소비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계층에서 노령계층으로의 연령변화 및 가구규모 축소에 따른 소비지출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연령계층을 10분위 소득계층으로 구분한 소득기준을 노인 가구와 근로연령계층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소득계층을 구분한 뒤, 소득계층별로 65세 이상 노인 2인가구 소비지출과 20~59세 근로연령계층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을 비교한다.

1단계: 전체연령계층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로 소득계층을 구분한다. 노령계층이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비교기준이 되는 20~59세 근로계층과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득분위를 전체연령계층의 10분위 소득계층 구분 기준으로 통일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단계: 가구규모 축소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기 10분위 중 65세 이상 2인 가구와 20~59세 2인 이상 가구를 추출하였다. 65세 이상 노령계층은 노인부부 가구를 표준가구로 보고, 20~59세 가구는 1인가구만 제외하고 2인 이상의 가구원수는 통제하지 않았다. 근로연령계층 가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많은 가구원들을 부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단계: 총소비지출이 2000년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에 있는 노령가구의 소비지출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정해 주었다.

4단계: 20~59세 근로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을 100으로 볼 때 3단계에서 보정한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비율을 지출항목별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치는 동일한 소득수준하에서 연령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소비수준의 변화를 도출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노령계층이 소득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수준을 억제하는 효과를 통제하고 소비지출의 연령효과

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방법 II: 소득효과 통제하에 근로연령계층 소득수준 대비 노령계층 소비지출수준 비교

방법 II 역시 방법 I 과 마찬가지로 소비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계층에서 노령계층으로의 연령변화에 따라 변화된 소비지출수준을 기준으로 20~59세 근로연령계층의 소득대비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체연령계층을 10분위 소득계층으로 구분한 소득기준을 노인가구와 근로연령계층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소득계층을 구분한 뒤, 소득계층별로 65세 이상 노인 2인 가구 소비지출과 20~59세 근로연령계층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비교한다. 이 때, 소득은 가구주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가구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근로, 사업, 부업소득), 가구의 총소득, 그리고 가구의 가처분소득(총소득-조세 및 사회보장부담)을 각각 분모로 하여 비교해 본다.

1단계에서 3단계는 방법 I 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4단계: 20~59세 근로계층의 소득수준 대비 3단계에서 보정한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총소비지출수준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치는 노령계층의 적절한 소비지출을 위하여 근로연령계층 소득의 몇 %정도가 필요한지를 시사하여 준다. 예컨대 1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노령계층의 경우에도 100만원이 주어졌을 때, 실제 소비에 사용한 지출이 그 중의 70%였다면, 노령계층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70% 정도를 보장해 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30% 정도는 연령의 변화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소득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다.

3) 방법 III: 소득효과 비통제하에 근로연령계층 소득수준 대비 노령계층 소비지출수준 비교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연령계층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다가 노령이 되면 얼마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는지를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종단적 패널데이터(longitudinal panel data)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조사되고 있는 가계소비지출조사는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아니므로 종단적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로연령계층에서 노령계층의 소득 및 소비변화를 분석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한적 상황에서 20~59세 연령계층

과 65세 이상 연령계층의 해당연령계층내에서 동일한 소득분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59세 연령계층내 1분위의 소득과 65세 이상 연령계층내 1분위의 소비를 비교하여 소득수준을 구해보고자 하였다. 즉, 20~59세 저소득층은 노령이 되어서도 저소득층으로 유지되고, 20~59세 고소득계층은 노령이 되어서도 고소득계층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0~59세와 65세 이상 계층을 동일한 패널인 것으로 상정하고 비교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방법Ⅲ은 방법Ⅰ, Ⅱ와 달리 전체연령계층에 걸쳐 동일한 소득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연령계층내에서 각각 10분위로 구분하여, 각 분위별로 20~59세 근로계층의 소득과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를 비교함으로써,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구해보고자 하였다. 이 때, 소득은 방법Ⅱ와 마찬가지로 가구주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가구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근로, 사업, 부업소득), 가구의 총소득, 그리고 가구의 가처분소득(총소득-조세 및 사회보장부담)을 각각 분모로 하여 비교해 본다.

1단계: 20~59세 근로계층 중 2인 이상 가구를 추출하여 총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를 구분하고,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령계층 중 2인 가구를 추출하여 총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를 구분한다. 이는 20~59세 근로연령계층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비교적 높은 소득을 유지하다가, 65세 이상 노령계층이 되면 노령에 따라 근로소득이 상실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수준이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코자 한 것이다.

2단계에서 3단계는 방법Ⅰ 및 방법Ⅱ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4단계: 20~59세 근로계층의 소득수준 대비 3단계에서 보정한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총소비지출수준의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치는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적절한 소비지출을 위하여 근로연령계층 소득의 몇 %정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예컨대, 근로시기에 저소득층이었던 경우에는 노령기에 근로시기 소득의 100% 이상이 필요소비를 위하여 필요하며, 근로시기에 고소득층은 근로시 소득의 50%만을 보장해주면 된다는 식의 결과가 제시될 수 있다.

2. 분석결과: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

1) 방법Ⅰ: 소득효과 통제하에 연령효과,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한 소비지출 수준 변화

동일한 소득이 주어졌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노령에 따른 소비수준을 분

석하는 방법 I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은 20~59세 근로연령계층 소비지출에 대비하여 평균 8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 차이는 노령에 따른 소비지출 행태 변화와 가구규모 축소 효과에 따른 필요 소비지출수준의 감소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동일한 소득수준을 가진 근로연령계층과 노령계층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소득계층별 소비성향의 상이성이라는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에 실제 욕구보다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200만원의 소득수준이라도 20~59세 근로연령계층에게는 중위소득 수준이지만, 65세 이상 노령계층에게는 고위소득계층에 속하고 그에 따라 상이한 소득계층에 따른 소비성향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지출항목별로 근로연령계층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은 교육비 0%, 교통통신비 63%, 식료품비 82%, 교양오락비 84%로 평균 수준 이하인 반면, 피복신발비 99%, 가구집기비 100%, 주거비 108%, 기타소비지출 120%로 근로연령계층 소비수준의 100% 전후의 지출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의료비는 215%로 근로연령계층 대비 2배 이상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볼 때, 연령효과에 의하여 부적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에 따른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연령효과에 의하여 정적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주거비, 기타소비지출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로부터 중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분위별 20~59세 근로연령계층 소비지출 대비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은 59~99%의 분포로 일정한 방향성 없이 나타나고 있다.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노령계층의 소비지출 수준이 근로연령계층의 5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6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나머지 분위는 74~91%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교육비, 가구집기,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지출항목에서 노령계층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 소비지출의 40% 미만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식료품, 주거비, 보건의료비, 기타소비지출도 63~77%의 소비지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교육 0%, 교통통신 72%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연령계층과 비슷하거나 크게

〈표 11〉 동일소득분위의 노령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소비지출 비교¹⁾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평균
식료품	0.63	0.81	0.83	0.81	0.78	1.02	0.81	0.97	0.83	0.69	0.82
주거	0.71	0.78	0.89	1.04	0.87	1.24	1.26	1.31	1.06	1.43	1.08
가구집기	0.39	0.65	0.72	0.99	1.15	1.09	1.10	1.13	1.03	1.16	1.00
피복신발	0.38	0.59	0.88	1.04	0.80	1.17	0.90	1.00	0.85	1.46	0.99
보건의료	0.77	2.20	2.48	2.99	1.88	2.74	1.67	3.65	1.54	2.30	2.15
교육	0.01	0.00	0.01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양오락	0.36	0.53	0.51	0.54	0.58	1.01	1.50	0.60	1.13	0.84	0.84
교통통신	0.35	0.50	0.57	0.56	0.55	0.72	0.42	0.89	0.73	0.66	0.63
기타소비	0.73	0.97	1.26	1.27	1.07	1.36	1.17	0.79	1.39	1.51	1.20
소비지출	0.52	0.74	0.81	0.88	0.75	0.98	0.81	0.91	0.84	0.90	0.83
보정후 소비지출 ²⁾	0.59	0.76	0.82	0.88	0.75	0.99	0.82	0.91	0.84	0.90	0.84

주: 1) 65세이상 2인가구 소비지출 / 20-59세 2인이상 가구 소비지출

2) 보정후 소비지출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의 소비지출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정한 후에 노령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소비지출을 비교한 결과임

상회하는 소비지출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상기하였듯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구규모를 고려한 1인당 가처분소득의 개념에서 보면, 노령계층의 가처분소득이 근로연령계층보다 훨씬 클 것이므로 사치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요약하면, 소득효과의 통제하에 노령에 따른 연령효과와 가구규모 축소효과를 고려하여 65세 이상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노령계층이 전체소득계층에 걸쳐 평균적으로 근로연령계층의 83%의 소비지출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지출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 이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정하면, 1분위 59%, 2분위 76%, 3분위 82%, 4분위 88%, 5분위 75%, 6분위 99%, 7분위 82%, 8분위 91%, 9분위 84%, 10분위 90%로 나타났다.

〈표 12〉 동일소득분위의 근로연령계층 소득수준 대비 노령계층 소비지출수준¹⁾

(단위: 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65+ 노 령계층	보정후소비지출 ²⁾	(A)	636,811	769,092	915,730	1,095,457	1,034,329	1,469,967
20-59 근로연 령계층	가구주 근로소득	(B)	183,788	517,369	780,664	1,024,230	1,210,851	1,426,855
	가구주및배우자소득	(C)	244,678	617,022	908,287	1,192,103	1,420,007	1,683,523
	가구 총소득	(D)	344,716	753,398	1,069,450	1,373,133	1,659,294	1,948,076
	가구 가처분소득	(E)	294,153	714,707	1,019,526	1,310,649	1,580,126	1,849,014
		A/B	3.46	1.49	1.17	1.07	0.85	1.03
		A/C	2.60	1.25	1.01	0.92	0.73	0.87
		A/D	1.85	1.02	0.86	0.80	0.62	0.75
		A/E	2.16	1.08	0.90	0.84	0.65	0.80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평균	
65+ 노 령계층	보정후소비지출 ²⁾	(A)	1,355,019	1,647,756	1,718,931	2,435,492	1,307,948	
20-59 근로연 령계층	가구주 근로소득	(B)	1,575,897	1,993,459	2,354,728	4,449,205	1,551,705	
	가구주및배우자소득	(C)	1,903,682	2,331,850	2,791,181	5,351,204	1,844,354	
	가구 총소득	(D)	2,287,421	2,710,616	3,371,817	6,347,032	2,186,495	
	가구 가처분소득	(E)	2,169,270	2,548,722	3,165,865	5,933,384	2,058,542	
		A/B	0.86	0.83	0.73	0.55	0.84	
		A/C	0.71	0.71	0.62	0.46	0.71	
		A/D	0.59	0.61	0.51	0.38	0.60	
		A/E	0.63	0.65	0.54	0.41	0.64	

주: 1) 전체가구의 소득분위를 10분위로 나눈 뒤 동일소득분위의 65세이상 2인가구 소비지출 / 20-59세 2인이상 가구 소득
 2) 보정후 소비지출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의 소비지출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정한 것을 의미.

2) 방법 II: 소득효과 통제하에 근로연령계층 소득수준 대비 노령계층 소비지출수준

방법 I 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득이 주어졌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소비수준을 분석하되, 비교 분모를 20~59세 근로연령계층 소득으로 하여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는 가구주소득 대비 84%, 가구주+배우자소득 대비 71%, 가구 총소득대비 60%,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근로연령계층 가구주소득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수준을 살

퍼보면, 그 비율이 소득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일정한 방향성이 대체로 관찰된다. 1분위는 노령계층의 소비수준이 근로연령계층 가구주소득의 무려 3.5배에 이르고 있으나, 2분위는 1.5배, 3분위는 1.2배, 4분위는 1.1배, 5분위는 85%, 6분위는 1.0배, 7분위는 86%, 8분위는 83%, 9분위는 73%, 10분위는 5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구주+배우자소득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을 살펴보면, 1분위는 2.6배, 2분위는 1.3배, 3분위는 1.0배, 4분위는 92%, 5분위는 73%, 6분위 87%, 7분위 71%, 8분위 71%, 9분위 62%, 10분위 46%로 나타나고 있다. 총소득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을 살펴보면, 1분위는 1.9배, 2분위는 1.0배, 3분위는 86%, 4분위는 80%, 5분위는 62%, 6분위 75%, 7분위 59%, 8분위 61%, 9분위 51%, 10분위 38%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은 1분위는 2.2배, 2분위는 1.1배, 3분위는 90%, 4분위는 84%, 5분위는 65%, 6분위 80%, 7분위 63%, 8분위 65%, 9분위 54%, 10분위 41%로 나타나고 있다.

3) 방법 III: 소득효과 비통제하에 근로연령계층 소득수준 대비 노령계층 소비지출수준

방법 I, II와 달리 연령계층별 상대적 소득분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50~59세와 소득 대비 65세 이상 소비지출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 가구주 소득대비 50%, 가구주+배우자 소득 대비 42%, 가구총소득 대비 36%,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38%의 필요소득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분위에서 필요소득수준이 높고 고소득분위에서 필요소득수준이 낮은 식으로 대체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소득을 분모로 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을 비교한 경우 1분위는 노령계층의 소비수준이 근로연령계층 가구주소득의 무려 1.5배에 이르고 있으나, 2계층은 75%, 3계층은 59%, 4계층은 59%, 5계층은 49%, 6분위는 51%, 7분위는 46%, 8분위는 52%, 9분위는 47%, 10분위는 3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구주+배우자소득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을 살펴보면, 1분위는 1.2배, 2분위는 65%, 3분위는 51%, 4분위는 50%, 5분위는 41%, 6분위 43%, 7분위 40%, 8분위 44%, 9분위 40%, 10분위 29%로 나타나고 있다. 총소득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을 살펴보면, 1분위는 96%, 2분위는 56%, 3분위는 44%, 4분위는 43%, 5분위는 36%, 6분위 37%, 7분위 34%, 8분위 37%, 9분위 33%, 10분위 25%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은 1분위는 1.0배, 2분위는 58%, 3분위는 46%, 4분위는 45%, 5분위는 37%, 6분위 38%, 7분위 36%, 8분위 39%, 9분위 35%,

〈표 13〉 연령계층별 동일소득분위의 근로연령계층 소득수준 대비 노령계층 소비지출수준¹⁾
(단위: 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65+ 노령계층	보정후소비지출 ²⁾	(A)	658,491	633,077	628,849	727,403	692,832	814,747
20-59 근로연 령계층	가구주 근로소득	(B)	455,637	846,366	1,065,676	1,240,246	1,405,236	1,583,130
	가구주및배우자소득	(C)	554,258	976,265	1,242,117	1,456,994	1,678,387	1,886,615
	가구 총소득	(D)	687,679	1,136,589	1,442,087	1,702,340	1,949,763	2,231,612
	가구 가처분소득	(E)	646,308	1,083,372	1,377,240	1,617,921	1,852,417	2,117,611
		A/B	1.45	0.75	0.59	0.59	0.49	0.51
	A/C	1.19	0.65	0.51	0.50	0.41	0.43	
	A/D	0.96	0.56	0.44	0.43	0.36	0.37	
	A/E	1.02	0.58	0.46	0.45	0.37	0.38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평균	
65+ 노령계층	보정후소비지출 ²⁾	(A)	882,628	1,105,802	1,192,809	1,696,299	903,294	
20-59 근로연 령계층	가구주 근로소득	(B)	1,901,094	2,126,730	2,525,776	4,815,661	1,796,555	
	가구주및배우자소득	(C)	2,228,778	2,509,837	3,017,214	5,786,472	2,133,694	
	가구 총소득	(D)	2,578,953	3,003,793	3,650,258	6,857,409	2,524,048	
	가구 가처분소득	(E)	2,426,582	2,825,293	3,424,728	6,406,877	2,377,835	
		A/B	0.46	0.52	0.47	0.35	0.50	
	A/C	0.40	0.44	0.40	0.29	0.42		
	A/D	0.34	0.37	0.33	0.25	0.36		
	A/E	0.36	0.39	0.35	0.26	0.38		

주: 1) 연령계층별로 소득분위를 각각 10분위로 나눈 뒤 동일소득분위의 65세이상 2인가구 소비지출 / 20-59세 2 인이상 가구 소득
2) 보정후 소비지출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의 소비지출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보정한 것을 의미.

10분위 26%로 나타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노령계층의 소비수준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 및 소득수준 비교분석을 통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 도출을 시도한 몇 안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노인이라는 인생주기상의 연령적 특성으로 인한 소비수준의 변화를 감안한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필요소득수준을 도출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노령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과 비교하여 가지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령계층과 20-64세 근로연령계층 가구주의 가구소비지출을 비교한 결과,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간에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역시 교육비이고, 그 다음으로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은 반면, 연령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고(노령이 되면), 비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무직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과 가구원수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소비지출이 근로계층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 부양가구원 규모의 축소, 인생주기상 연령에 따른 욕구의 상이성 등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각각 소득효과, 가구규모효과, 연령효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소득의 제약 없이 노령으로 인한 자연스런 지출변화를 감안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을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보고, 소득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연령효과와 가구규모효과만을 감안하여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을 산출하였다. 20~59세 근로연령계층의 소비 및 소득을 분모로 하여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소비 및 소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소비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인의 평균소비수준은 20~59세 근로계층 소비수준의 84% 수준이며, 소득항목별로는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에서 현격히 감소된 소비지출을 보인 반면, 보건의료비에서는 근로계층보다 훨씬 높은 소비지출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부적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거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계층

별로는 소득수준과 일정한 방향성있는 관계없이 근로연령계층 소비지출수준의 59~99%의 소비지출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20-59세 근로연령계층 가구주 소득 대비 노인의 소비지출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 필요소득수준이 84%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필요소득수준이 높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필요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나, 소득수준과 필요소득수준간의 반비례 관계가 도출되었다. 1분위의 경우 근로연령계층 소득의 3.5배에 달하는 소비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분위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85%, 10분위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5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59세 근로연령계층 총소득 대비 노인의 소비지출수준을 분석하면, 평균 필요소득수준이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경우 근로연령계층 소득의 1.9배에 달하는 소비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분위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62%, 10분위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38%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59세 근로연령계층 가처분소득(총소득-조세 및 사회보장부담) 대비 노인의 소비지출수준을 분석하면, 평균 필요소득수준이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경우 근로연령계층 소득의 2.2배에 달하는 소비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분위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65%, 10분위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41%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59세 근로연령계층 가구주 소득 대비 노인의 소비지출수준을 분석하면, 평균 필요소득수준이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효과 통제시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과 필요소득수준간의 반비례 관계가 도출되었다. 1분위의 경우 근로연령계층 소득의 1.5배에 달하는 소비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분위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49%, 10분위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3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59세 근로연령계층 총소득 대비 노인의 소비지출수준을 분석하면, 평균 필요소득수준이 36% 수준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경우 근로연령계층 소득의 96%에 달하는 소비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분위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36%, 10분위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25%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59세 근로연령계층 가처분소득(총소득-조세 및 사회보장부담) 대비 노인의 소비지출수준을 분석하면, 평균 필요소득수준이 38% 수준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경우 근로연령계층 소득의 100%에 달하는 소비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분위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37%, 10분위의 경우에는 동비율이 26%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상기와 같이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표 14〉 노령계층 필요소득수준(2): 65+, 60+/20~59

방법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방법 I	-65+ 소비/20~59소비	0.59	0.76	0.82	0.88	0.75	0.99
	-60+ 소비/20~59소비	0.59	0.77	0.81	0.85	0.80	0.86
방법 II	-65+ 소비/20~59가구주소득	3.46	1.49	1.17	1.07	0.85	1.03
	-60+ 소비/20~59가구주소득	3.49	1.52	1.16	1.04	0.91	0.89
	-65+ 소비/20~59가구주+배우자소득	2.60	1.25	1.01	0.92	0.73	0.87
	-60+ 소비/20~59가구주+배우자소득	2.62	1.27	1.00	0.89	0.78	0.76
	-65+ 소비/20~59총소득	1.85	1.02	0.86	0.80	0.62	0.75
	-60+ 소비/20~59총소득	1.86	1.04	0.85	0.77	0.67	0.66
	-65+ 소비/20~59가처분소득	2.16	1.08	0.90	0.84	0.65	0.80
	-60+ 소비/20~59가처분소득	2.18	1.10	0.89	0.81	0.70	0.69
방법 III	-65+ 소비/20~59가구주소득	1.45	0.75	0.59	0.59	0.49	0.51
	-60+ 소비/20~59가구주소득	1.46	0.74	0.60	0.58	0.59	0.52
	-65+ 소비/20~59가구주+배우자소득	1.19	0.65	0.51	0.50	0.41	0.43
	-60+ 소비/20~59가구주+배우자소득	1.20	0.64	0.51	0.50	0.50	0.44
	-65+ 소비/20~59총소득	0.96	0.56	0.44	0.43	0.36	0.37
	-60+ 소비/20~59총소득	0.97	0.55	0.44	0.43	0.43	0.37
	-65+ 소비/20~59가처분소득	1.02	0.58	0.46	0.45	0.37	0.38
	-60+ 소비/20~59가처분소득	1.03	0.58	0.46	0.45	0.45	0.39
총합	-65+ 계층 필요소득수준	1.70	0.90	0.75	0.72	0.58	0.68
	-60+ 계층 필요소득수준	1.71	0.91	0.86	0.70	0.65	0.62
방법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방법 I	-65+ 소비/20~59소비	0.82	0.91	0.84	0.90	0.84	
	-60+ 소비/20~59소비	0.87	0.97	0.91	0.79	0.83	
방법 II	-65+ 소비/20~59가구주소득	0.86	0.83	0.73	0.55	0.84	
	-60+ 소비/20~59가구주소득	0.92	0.89	0.78	0.48	0.84	
	-65+ 소비/20~59가구주+배우자소득	0.71	0.71	0.62	0.46	0.71	
	-60+ 소비/20~59가구주+배우자소득	0.76	0.76	0.66	0.40	0.70	
	-65+ 소비/20~59총소득	0.59	0.61	0.51	0.38	0.60	
	-60+ 소비/20~59총소득	0.63	0.65	0.55	0.34	0.59	
	-65+ 소비/20~59가처분소득	0.63	0.65	0.54	0.41	0.64	
	-60+ 소비/20~59가처분소득	0.67	0.69	0.58	0.36	0.63	
방법 III	-65+ 소비/20~59가구주소득	0.46	0.52	0.47	0.35	0.50	
	-60+ 소비/20~59가구주소득	0.51	0.51	0.50	0.38	0.53	
	-65+ 소비/20~59가구주+배우자소득	0.40	0.44	0.40	0.29	0.42	
	-60+ 소비/20~59가구주+배우자소득	0.44	0.43	0.42	0.32	0.44	
	-65+ 소비/20~59총소득	0.34	0.37	0.33	0.25	0.36	
	-60+ 소비/20~59총소득	0.38	0.36	0.35	0.27	0.37	
	-65+ 소비/20~59가처분소득	0.36	0.39	0.35	0.26	0.38	
	-60+ 소비/20~59가처분소득	0.40	0.38	0.37	0.28	0.40	
총합	-65+ 계층 필요소득수준	0.57	0.60	0.53	0.43	0.61	
	-60+ 계층 필요소득수준	0.62	0.63	0.57	0.40	0.61	

에 의하여 도출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을 단순 평균하여 보면, 전체적으로는 61%의 필요소득수준이 도출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1분위의 경우 1.70~1.71배, 2분위의 경우 90~91%배, 3분위의 경우 75~86%, 4분위의 경우 70~72%, 5분위의 경우 58~65%, 6분위의 경우 62~68%, 7분위의 경우 57~62%, 8분위의 경우 60~63%, 9분위의 경우 53~57%, 10분위의 경우 40~4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서,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은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며,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의 40년 가입기준 급여율(평균소득계층 60%, 최저소득계층 100%, 최고소득계층 41%)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평균소득계층 61%)을 거의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40년 가입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만으로 필요소득수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향후 연금제도가 성숙할 경우 노동생명표를 이용한 평균 가입기간이 약 30년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신경혜, 2003), 30년 가입기준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평균소득계층 45%, 최저소득계층 100%, 최고소득계층 31%으로, 현재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의 68~74% 수준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공적연금만으로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을 충족시킬 수도 없고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연금급여율의 적절성은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 중 공적연금의 비중과 역할의 적절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2000),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미발간 보고서.
- 국민연금연구센터(2001), 《노령연금의 급여적절성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 권문일(1999), 《국민연금급여의 적절성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 권문일(2000), “급여의 적절성,”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1997), 《국민연금제도 개선》.
- 김용하·석재은·윤석원(1995),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용하(1997), “적정연금급여, 보험료, 수급연령,”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국민연금제도 개선관련 자료집》.
- 석재은(2000), “노인 소득원 구성과 공·사 역할분담 분석,” 《사회보장연구》 16(1): 51-78.
- 석재은·김태완(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김용하(2001), 《공적연금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원종욱·김수봉·백화중·김용하·김성민·김태완(200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경혜(2002), “노동생명표를 이용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정,” 《연금포럼》 겨울, 국민연금연구센터.
- 안중범·전승훈(2003), “은퇴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제4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원종욱(2000),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석명 외(1999),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배·윤병식·석재은·김용하·권문일·김태완(2001),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01),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통계청(2002), 《2000년도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xel, Borsch-Supan(1997), “Retirement Income: Level, Risk, and Substitution among Income Components,” *NBER Working Paper*.
- Disney, Richard and Edward Whitehose (2001), *Cross-Country Comparisons of Pensioner's Incomes*, UK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 Disney, Richard and Paul Johnson(2001), *Pension Systems and Retirement Incomes across OECD Countries*, Edward Elgar.

- Hauser, Richard(1998), *Adequacy and Poverty among the Retired*, OECD Working Paper.
- International Labour Office(1989), *Social Security Protection in Old-Ag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76th Session. Geneva.
- Kalisch, D. and T. Aman(1998), "Retirement Income Systems: The Reform Process Across OECD Countries," *Joint ILO-OECD Workshop: Development Reform of Pension Scheme*, DEELS/ILO.
- OECD(1988), *Reforming Public Pensions*. Social Policy Studies No.5.
- Rein, Martin and John Turner(1999), "Work, Family, State and Market: Income Packaging for Older Household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52: 93-106.